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

2021. 7. 16 (금) 기준

- *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 대책본부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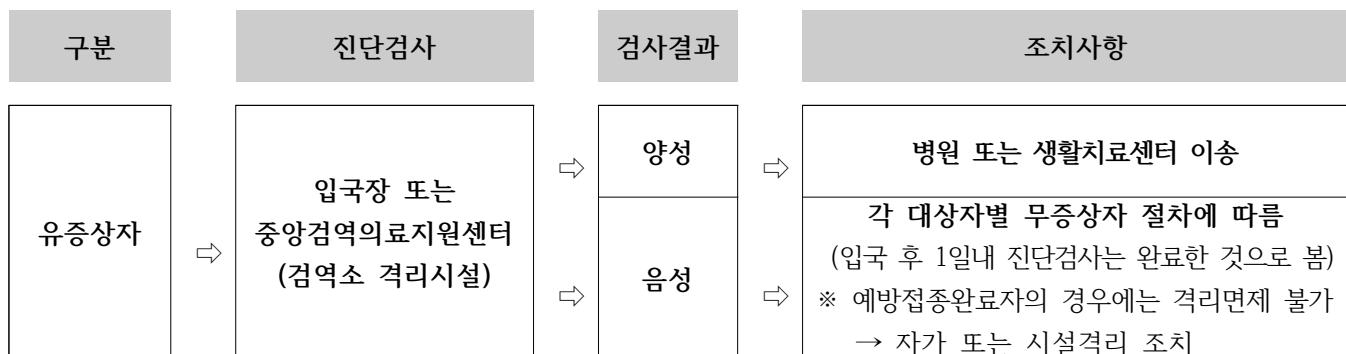
* 출처 : <http://ncov.mohw.go.kr/>

구 분	상세내용
특이사항	<p>○(6.16) 6월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 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 관광 등 비필수 목적 입국 시 격리 면제 불가능 <p>○(7.1)7월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 적용 제외-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p>○(7.4)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필리핀, 파키스탄 <p>○(7.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이동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가족 또는 지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탑승을 제지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또는 여권에 부착한 해외접종완료자 스티커 제시 후 탑승 요청 ※ 단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한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p>○(7.15)해외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2021.7.15. 0시 도착 항공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변경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당국의 조치-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영유아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 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검역대응 절차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하여 출국한 '예방접종완료자'만 제출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해외에서 입국 시 이동안내(서울 거주자 한함)

*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① 자차 이용안내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여권, 항공권 지참

진단 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

14일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

② 특별수송택시 이용안내 (이용료는 자부담 6만 5천원~13만원, 구역별 정액요금, 24시간 운영)

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

▶ T1은 12~13번 게이트 중간
▶ T2은 2~3번 게이트 중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여권, 항공권 지참
* 당일검사가 어려울 경우,
예약 후 익일검사

승객 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

* 배정된 택시는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립니다.

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

③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 (이용료 : 16,000원)

입국 수속 후, 인천공항 T1(1층), T2(지하1층) 대합실 이동	노선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 ► 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 진단검사 및 자택 이동 등에 활용 (하차이후에 거주지 이동할 자차없는 부득이한 경우, 구청차량 요청가능)	버스탑승 및 자치구별 하차지(보건소 선별진료소) 로 이동	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 주지로 이동 (개인차량을 우선이용 권고 없을 경우에만 구청차량 이용)
--	---	--	--

■ 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출처:출입국관리사무소

구 분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시행일	20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20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제도 2020.12.10부터 시행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구 분	내 용
도입목적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신고 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정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숙박업자의 신고의무	외국인이 숙박할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고나서에 신고

*경보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 도심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양성 자가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1.7.1~31까지)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173개 국가 대상]

전액지원 국가(62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가봉, 김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리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베네수엘라, 베냉,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튜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일부지원 국가(61개국)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미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리루스, 부룬디, 부르카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세아셀,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양골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터키,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홍콩

미지원 국가(50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리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미얀마,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수리남,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드가바부다, 온두라스,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조지아, 자부티, 짐바브웨, 캄보디아, 캐나다,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피카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피지공화국, 헝가리

당신이 더욱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Already, We're ready



Korea ETA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21년 5월부터 시행

대상국가
112개국(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상국가는 홈페이지 확인

신청방법
www.k-eta.go.kr 접속
(PC 및 모바일앱)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수수료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
- 시험운영 기간('21. 5월 ~ 8월)에는 수수료 면제



K-ETA 주요 안내사항

신청방법
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 가능, 최대 30명까지 동반신청 가능

결과확인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K-ETA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한화1만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등 별도)입니다.

재신청
유효기간 내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및 정보를 오입력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 면제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대한국가 사증면제 국가(66개국) 및 무사증 허용국가 (46개국) 112개국 국민			
기아이아나	모나코	수리남	체코
과테말라	모로코	스웨덴	칠레
괌	모리셔스	스위스	키치호스탄
그레나다	몬테리ego	스페인	키타르
그리스	몰타	슬로바키아	캐나다
나우루	미국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리아나시아	상가포르	풀럼비아
네덜란드	마리아나	마리아나비에리트	푸루이엔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포르투아라
뉴질랜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기아비사
뉴질랜드나이	네덜란드	네이지터	데국
나카라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트리니다드
대만	네덜란드	아일랜드	동가
덴마크	네덜란드	안도르	파부루
도미니카공화국	보스니아	알제리아	한나자
도미니카공화국	보스니아	엘티카가부다	트리니다드
독일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마리아나
라트비아	브라질	에스토니아	파라과이
러시아	브루나이	에콰도르	필리핀
레스토	사모아	엘살바도르	필리우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殃국	페루
록센부르크	사이판	오만	프로부각
리투아니아	산마리노	오스트리아	풀란드
리히텐슈타인	세르비아	온두라스	포로스
마셜제도	세이셸	우루과이	피지
마카오	세인트루시아	이스라엘	핀란드
말레이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일본	헝가리
멕시코	슬로伐체	자메이카	호주
			총공

당신이 더욱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Already, We're ready
Korea ETA



안내 및 문의

- K-ETA 대표 홈페이지(www.k-eta.go.kr)
- K-ETA 안내 및 공지사항 확인
- K-ETA 센터에 이메일 문의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21. 5월부터)
-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문의 가능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및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신속, 간편하게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1년 5월부터 K-ETA를 받음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신속한 입국심사

관광정보 안내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21개 국가

기아이아나, 괌, 뉴칼레도니아,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모나코, 몰타, 미국, 베네수엘라, 바란카, 베네수엘라, 산마리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조네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필리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상국이 확대 예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신청방법과 절차

K-ETA 대표 홈페이지 www.k-eta.go.kr에서 PC와 모바일(앱)로 신청



신청 바로가기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7월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안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7월)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 ('21.5.2.)>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입국일 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 제외

*6월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21개국

남아공, 말라위, 보즈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 매월 유행국가 공지 예정

【적용기간】

- '21. 7. 1. ~ 21. 7. 31. (7.1 입국자부터 적용)